스위스 라이선스가 필요한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이 질문은 여러 형태로 제기됩니다. 추크의 한 유한회사(GmbH)는 일반 대중에게 토큰을 판매하려 하고, 지갑 개발사는 스왑 기능을 추가하려 하며, 한 패밀리오피스는 친분 있는 세 가문의 가상자산 보유분을 관리하려 하고, 싱가포르의 한 거래소는 유럽 고객을 온보딩할 스위스 자회사를 원합니다. 어느 경우든 스위스에서의 답은 사업 모델을 일련의 법률에 차례로 통과시켜 얻게 됩니다. 스위스에는 단일한 「가상자산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DLT법은 기존 법률 10개를 개정하고 하나의 새로운 라이선스 범주인 DLT 거래시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실무상 여전히 드뭅니다.[1] 그 밖의 모든 것은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지급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범주에 새로운 활동을 끼워 맞추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언제나 자금세탁방지법입니다. 제3자를 위해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수령, 보유, 이전 또는 교환하는 사업은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하거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2] 이 의무는 뒤따르는 건전성 라이선스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실제로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사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는지 묻습니다. 고객에게 계약상 청구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위해 보유하는 토큰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은행법(BankA) 제1조에 따른 예금이며, 상환 약속에 대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3] 세 번째 필터는 금융기관법(FinIA)으로, 가상자산만 운용하는 자산운용인을 포함하여 위임장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모든 자를 포착합니다.[4] 네 번째 필터는 토큰이 증권인지 묻습니다. 타인을 위해 증권을 거래하거나 증권 거래 장소를 운영하면 증권회사 라이선스와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5] 다섯 번째 필터는 집합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운용을 통해 공동 투자를 위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는 것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집합투자기구입니다.[6]

질문의 순서

1. 사업이 스위스 내에서 또는 스위스로부터 영업으로 제3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보유, 이전, 교환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취급합니까? 그렇다면 금융중개기관이므로 영업 개시 전에 SRO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라면 아마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객 주문을 중개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받는 프런트엔드 운영자는 위험에 노출됩니다.[7]
2. 사업이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권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20명을 초과하는 자로부터 가상자산이나 법정화폐를 받거나, 그 목적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합니까? 그렇다면 이는 예금 수취입니다. 다만 자산이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에 따른 분리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보유되고 사업자가 이를 자기 계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은행법 제1b조에 따른 핀테크 라이선스는 이자 지급과 운용 없이 1억 스위스프랑까지의 예금 수취를 허용하며, 은행령(BankO) 제6조에 따른 샌드박스는 라이선스 없이 100만 스위스프랑까지 허용합니다.[8]
3. 사업이 위임장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합니까? 그렇다면 금융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자산운용인이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로 FINMA 라이선스와 감독기구(AO) 가입이 필요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문은 금융기관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지만, 금융서비스법(FinSA)의 영업행위 규칙과 고객 자문인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9]

4. 토큰이 증권(표준화되어 있고, 대량 거래에 적합하며, 청구권이나 사원권을 표창하는 것)입니까? 그렇고 사업이 타인을 위해 이를 거래하거나, 인수하거나, 시장을 운영한다면 증권회사 라이선스나 거래소 인가가 필요합니다. FINMA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지급형 토큰과 순수한 유틸리티형 토큰은 증권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현물 거래소 대부분이 FINMA 라이선스 없이 SRO 회원으로 운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0]
5. 사업이 집합적 운용을 위해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모읍니까? 그렇다면 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법(CISA)이, 그 운용자에게는 금융기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집합자산 운용자에 대한 소규모 기준(de minimis) 규정과 적격 투자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1]
6. 사업이 법정화폐로 액면 상환이 가능하거나 준비금으로 가치가 연동된 토큰을 발행합니까? 그렇다면 FINMA는 발행자를 예금 수취자로 보거나 그 약정을 집합투자로 봅니다. 은행 보증 구조는 FINMA의 2024년 지침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됩니다.[12]
7. 사업이 투자설명서의 기능을 하는 문서와 함께 일반 대중에게 토큰을 공모합니까? 토큰이 증권이라면 금융서비스법 제35조 이하가 적용되며, 제36조와 제37조의 면제가 있습니다.[13]

단계	질문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설명 위치
1	제3자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 영업성	영업 개시 전 SRO 가입(자금세탁방지법)	아마도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범위 밖. 프런트엔드 및 수수료 관련 위험 확인	제F편 제II장
2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예		은행법상 문제 없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단계	질문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설명 위치
	금 또는 상환 약속	은행 라이선스, 핀테크 라이선스(제1b조) 또는 샌드박스. 또는 제16조 제1bis호에 따른 분리		제E편 제II장
3	위임장에 따른 재량적 운용	자산운용인 라이선스(금융기관법) + AO	자문만: 금융서비스법 영업행위 규칙	제E편 제III장
4	토큰이 증권이며 타인을 위해 거래됨	증권회사 라이선스 또는 거래소(금융시장인프라법)	지급형 토큰의 현물 거래소: SRO만	제E편 제V장
5	집합투자를 위한 자금 모집	집합투자법상 투자기구 + 라이선스를 받은 운용자	직접 보유	제E편 제VI장
6	스테이블코인 또는 액면 상환	은행 또는 집합투자기구 분석. FINMA 사전결정	지급형 토큰	제E편 제VII장
7	증권형 토큰의 공모	면제되지 않는 한 투자설명서(금융서비스법 제35조)	유틸리티형 또는 지급형 토큰: 투자설명서 불필요	제E편 제IV장

사전결정의 문제

위 순서를 따라가다가 2단계, 4단계 또는 6단계에서 불분명한 답에 이른 설립자는 ICO 지침에 따라 FINMA에 공식 질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INMA는 구속력 없는 평가 서한으로 답변하는데, 실무상 은행, 감사인 및 SRO는 이를 온보딩의 근거로 받아들입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절차에는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며, 비용은 시간 단위로 청구됩니다.[14]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추크의 관점

추크의 스타트업은 대개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 3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소에 유한회사(GmbH)나 주식회사(AG)를 설립하고, VQF 또는 추크나 취리히의 다른 SR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순서의 어느 단계라도 의문이 있으면 FINMA 질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SRO 절차는 회사 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SRO는 먼저 관련 인물과 사업 계획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SRO의 가입 승인 전에 단 한 명의 고객 토큰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주

1. Federal Act on the Adaptation of Federal Law to Developments 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2020년 9월 25일(AS 2021 33), 2021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단계적으로 시행; 제C편 제V장 참조. ↩
2. Anti-Money Laundering Act, 1997년 10월 10일(자금세탁방지법, AMLA; GwG, SR 955.0), 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영업성 기준은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AMLO; GwV, SR 955.01) 제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 제F편 제I장 및 제II장 참조. ↩
3. Banking Act, 1934년 11월 8일(은행법, BankA; BankG, SR 952.0), 제1조 제2항 및 제1a조; Banking Ordinance(은행령, BankO; BankV, SR 952.02), 제5조; 제E편 제II장 참조. ↩
4. Financial Institutions Act, 2018년 6월 15일(금융기관법, FinIA; FINIG, SR 954.1), 제2조 제1항 및 제17조 이하; 제E편 제III장 참조. ↩
5.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2015년 6월 19일(금융시장인프라법, FinMIA; FinfraG, SR 958.1), 제2조 b호 및 bbis호와 제73a조 이하; 금융기관법 제41조 이하; 제E편 제V장 참조. ↩
6.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 2006년 6월 23일(집합투자법, CISA; KAG, SR 951.31), 제7조; 제E편 제V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비수탁형 지갑 제공자와 DeFi 프런트엔드에 관한 FINMA의 실무는 제F편 제II장 및 제E편 제IX장에서 설명함; 2022년 DeFi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는 제C편 제VI장에서 논의함. ↩
8. 은행법 제1b조 및 제16조 제1bis호; 은행령 제5조 제3항 c호(결제 계좌) 및 제6조(샌드박스); 스테이킹에 관한 FINMA Guidance 08/2023, 2023년 12월 20일; 제E편 제II장 및 제VIII장 참조. ↩
9. 금융기관법 제17조 제1항 및 제61조 이하; Financial Services Act, 2018년 6월 15일(금융서비스법, FinSA; FIDLEG, SR 950.1), 고객 자문인 등록부에 관한 제28조 이하; 제E편 제III장 및 제IV장 참조. ↩
10. 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2018년 2월 16일, 제3절; Supplement, 2019년 9월 11일; 제E편 제I장 참조. ↩
11. 집합투자법 제7조 및 제10조; 금융기관법 제24조 제2항(집합자산 운용자에 대한 소규모 기준); 제E편 제VI장 및 제P편 제VI장 참조. ↩
12.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FINMA Guidance 06/2024, 2024년 7월 26일; 제E편 제VII장 참조. ↩
13. 금융서비스법 제35조~제37조; 제E편 제IV장 참조. ↩
14. FINMA ICO Guidelines, 2018년 2월 16일, 부속서(질의에 필요한 최소 정보); FINMA Ordinance on the Levying of Fees and Charges, 2008년 10월 15일(FINMA-GebV, SR 956.122), 제8조; 제E편 제X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